



한국산업단지공단



수신자 주식회사 데콘플러스 대표이사
(경유)

제 목 ['21년 펀드] 데콘 스마트 물류센터 사용승인 이후 구조고도화사
 업 이행절차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2021년도 산단환경개선펀드 ‘데콘 스마트물류센터 개발사업’ 관련하여, 건물 사용승인이 완료(2024.5.14.)에 따른 개발이익 정산 및 구조고도화계획 준공인가 절차 이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3. 우리 공단과 (주)데콘플러스가 체결한 대행사업의 경우 준공인가일까지 그 소유권을 유지하여야 하며, 절차를 미이행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 구조고도화 준공인가를 득하지 아니하거나 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대행계약 해제 또는 해지사유(대행계약서 제13조1항의2)에 해당합니다.
4. 또한,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대행사업자가 설치완료한 건축물 철거할 수 있으며(대행계약서 제14조1항), 그에 따른 비용도 수반됨(대행계약서 제5조2항의6)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



★대리

김누리

팀장

09/24

강석철

협조자

감사

(

)

시행 경기입지혁신팀-6003

(2024.09.24.) 접수

(

)

우(15433)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 (원시동)

/www.kicox.or.kr

전화 070-8895-7596

/전송 031-491-5539

/ nuri808@kicox.or.kr

/ 비공개(7)

산단 내 중대사고 20% 감축, 산단공 관할 작업장 내 중대재해 Zero



한국산업단지공단



수신자 주식회사 데콘플러스 대표이사
(경유)

제 목 [`21년 펀드] 데콘 스마트 물류센터 공매 취하 관련 업무 문의에
 관한 회신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주식회사 데콘플러스 2025-05-17호(2025.05.26.) 「시흥정왕동물류센터 구조고도화사업 공매 취하 관련 업무 문의의 건」 관련입니다.
3. 위 호와 관련, 귀 사에서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추진중인 데콘 스마트물류센터 개발사업 (정왕동 2100-2)은 구조고도화 준공인가를 득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대행계약서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행계약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4. 또한,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우리 공단은 대행계약서 제13조8항에 의거 사업부지 용도 변경(산업→지원*) 사항을 취소 또는 환원(지원→산업)할 수 있습니다.
* 관련근거 :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-40호)
5. 용도가 환원된 부지는, 시화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입주자격을 갖춘 자만이 취득 가능하며 우리 공단과 산업집적법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6. 본 사업은 우리 공단의 2021년도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사업으로,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



★대리

김누리

팀장

05/27

이선복

협조자

감사

(

)

시행 경기입지혁신팀-3014

(2025. 5. 27.) 접수

(

)

우(15433)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 (원시동)

/www.kicox.or.kr

전화 070-8895-7596

/전송 031-491-5539

/ nur i808@kicox.or.kr

/ 비공개(7)

산업단지 내 중대사고 20% 감축, 산업공 관할 사업장 내 산업재해 ZERO